

## 1. 개정이유

어선용 구멍의 형태 및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어업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선 사고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첨단 안전장비(어선위치 발신장치, 위성조난위치발신장치 등)를 대폭 확충한 만큼 기존 설비 중 신호탄류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쉽게 구입·교체가 가능한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에 설치된 선등의 높이를 어선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구멍설비 종류에 작업용 구멍의가 추가됨에 따라 비치방법을 명시 하고자함(안 제55조)
- 나. 구멍설비 종류에 작업용 구멍의를 추가하여 어업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함(안 별표 3)
- 다. 신호탄류(자기발연신호, 로켓낙하산신호) 비치의무 삭제(안 별표 3)
- 라. 소화기의 종류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소화기를 추가 하고자함(안 제59조)
- 마. 선등의 높이 및 간격을 어선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최소높이 기준으로 개정하고자함(안 제7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어선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익는”을 “「어선설비기준」 제45조제1항 각호의 구명조끼 등은”으로 한다.

제59조 표의 비고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말소화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소화기(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로 대체가능함.

제7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획만재흡수선(「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흡수선을 말한다.)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장등의 아래로 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하단 선등의 높이를 계획만재흡수선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색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 ⑥ 2개 이상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등 간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적절하게 배치할 것

별표 3 구명설비의 비치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종류	제64조제1항제3호 적용 어선	그 밖의 어선	비고
구멍 조끼 또는 어선용 구멍의 또는 작업용 구멍의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승선하는 경우 실제로 승선하는 인원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과 같은 수의 구멍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li> <li>○ 작업용 구멍의는 「선박안전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합격한 선박용 물건으로서 형태가 외투형(긴팔형, 반팔형, 조끼형) 또는 일체형(긴바지형, 반바지형)인 것에 한한다.</li> <li>○ 「어선설비기준」 제26조의2의에 따른 어선용 구멍의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62. 작업용 구멍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어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li> </ul>
구멍부환	2개	-	-
자기점화등	1개	-	○ 주간에만 운항하는 어선에는 비치 제외
<삭제>	<삭제>	-	-
<삭제>	<삭제>	-	<삭제>

부 칙 <2020-000호, 2020.00.00>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구명조끼 등) <u>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u>의는 선원실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p> <p>제5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소형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p>	<p>제55조(구명조끼 등) 「<u>어선설비 기준</u>」 제45조제1항 각호의 <u>구명조끼</u> 등은 ----- ----- -----.</p> <p>제5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 -----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비치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톤수 5톤 미만</td> <td>간이식 또는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u>낙시 관리 및 육성법</u>」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톤수 5톤 이상</td> <td>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u>낙시 관리 및 육성법</u>」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td> </tr> </tbody> </table>	구분	비치수량	총톤수 5톤 미만	간이식 또는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총톤수 5톤 이상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비치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톤수 5톤 미만</td> <td>간이식 또는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u>낙시 관리 및 육성법</u>」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톤수 5톤 이상</td> <td>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u>낙시 관리 및 육성법</u>」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td> </tr> </tbody> </table>	구분	비치수량	총톤수 5톤 미만	간이식 또는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총톤수 5톤 이상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구분	비치수량												
총톤수 5톤 미만	간이식 또는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총톤수 5톤 이상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구분	비치수량												
총톤수 5톤 미만	간이식 또는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총톤수 5톤 이상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에 따른 낙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대식 소화기 1개당 간이식 소화기 2개로 대응할 수 있다.</li> <li>2. 2톤 미만 어선은 양동이 등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비치할 경우 소화기 비치를 면제함.</li> <li>3. &lt;신설&gt;</li> </ol>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대식 소화기 1개당 간이식 소화기 2개로 대응할 수 있다.</li> <li>2. 2톤 미만 어선은 양동이 등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비치할 경우 소화기 비치를 면제함.</li> <li>3. <u>분말소화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소화기(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로 대체가능함.</u></li> </ol>												

제70조(선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장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2. (생략)

3. 현연상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장 12미터 미만의 어선에서는 현연상 2.5미터 미만에 설치할 수 있으며, 현등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현등을 대신하여 양색등이 설치되면 양색등 보다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현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생략)

2. 양색등을 설치하면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장등보다 1미터 하방에 설치할 것

④ · ⑤ (생략)

제70조(선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계획만재흡수선(「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흡수선을 말한다.)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장등의 아래로 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하단 선등의 높이를 계획만재흡수선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③ -----  
-----.

1. (현행과 같음)

2. 양색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 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 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 (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2미터 이상이며 선등 간격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개의 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어업등 중 하부의 선등은 현 등의 상부로부터 이들 선등간의 거리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을 것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추가신호는 0.9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으로 설치될 것

⑥ 2개 이상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등 간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적절하게 배치할 것

[별표 3]

구명설비의 비치수량  
(제52조 및 제64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종류	제64조제1 항제3호 적용 어선	그 밖의 어선	비고
구명 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	최대승선 인원과 같은 수	최대 승선 인원 과 같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승선하는 경우 실제로 승선하는 인원이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li> <li>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한 어선에는 「어선설비 기준」 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용 구명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i> </ul>
구명 부환	2개	-	-
자기점 화등	1개	-	○ 주간에만 운항하는 어선에는 비치 제외
자기발 연신호	1개	-	-
로켓 낙하산 신호	4개	-	○ 주간에만 운항하는 어선에는 비치 제외

[별표 3]

구명설비의 비치수량  
(제52조 및 제64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종류	제64조제1 항제3호 적용 어선	그 밖의 어선	비고
구명 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 또는 작업용 구명의	최대승선 인원과 같은 수	최대 승선 인원 과 같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승선하는 경우 실제로 승선하는 인원이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li> <li>○ <u>작업용 구명의는 「선박안전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합격한 선박용 물건으로서 형태가 외투형(긴팔형, 반팔형, 조끼형) 또는 일체형(긴바지형, 반바지형)인 것에 한한다.</u></li> <li>○ 「어선설비기준」 제26조의2의에 따른 어선용 구명의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62. 작업용 구명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어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li> </ul>
구명 부환	2개	-	-
자기점 화등	1개	-	○ 주간에만 운항하는 어선에는 비치 제외
<삭제>	<삭제>	-	-
<삭제>	<삭제>	-	<삭제>